

강사에 관한 규정

규정 · 소관 교수지원팀 · 현행 규정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현행 판)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456>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10:04:44 ·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복무 윤리)

강사는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는 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

제4조(자격)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제5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당연 면직된다.

제6조(강사의 소속)

① 강사는 학과(부), 각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 ② 재임용이나 학과(부)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신규 임용

제7조(임용원칙)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2.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강사가 임용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임용절차)

- ①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7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 ② 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1. 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 2.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 3. 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제11조(임용방법)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임용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간소화된 모집 절차 또는 학과(부) 위촉을 통해 임용할 수 있으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임용은 모집정원을 별도로 할당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12조(제출서류)

- ①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지원서 1부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 3. 이력서 1부
 - 4. 경력증명서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09-05>
 - 1. 서약서 각 1부
 - 2. 심사총괄표 각 1부.
 - 3. 심사평정표 각 1부.
 - 4. 회의록 1부.

제13조(심사위원)

- ① 지원자의 임용 심사는 각 학부(과) 또는 부서, 단과대학, 교무처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2-09-05>
- ② 1차 심사는 단과대학별로 각 학부(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장으로 한다.
- ③ 2차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평가 및 배점)

- ① 강사 지원자에 대한 심사 항목, 배점 및 경력산정은 , 와 같다.
- ② 심사위원은 공개 모집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며,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심사 대상자를 2배까지 선정하여 시행한다.
- ④ 기초심사에서 선정된 임용 대상자는 전공심사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 후 최종 임용 대상으로 확정한다. 전공심사에서 임용 대상으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심사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및 인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정한다.

제16조(임용확정)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및 결의를 통해 임용 확정자를 정한다.

제17조(임용취소)

①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에 임용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의 위하여 파면 및 해임 된 후 각 5년 및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강사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지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임용의 제한)

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대학의 조교로 재직 중인 자
2. 강의 태만 또는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 결과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
4. 인사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5.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6. 교육자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기타 교무처장이 강사로서 부적격이라고 결정한 자

제3장 재임용

제20조(재임용 원칙)

- ①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 ②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9-05>

제21조(재임용심사위원회)

- ① 강사의 재임용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2조(재임용 절차)

- ①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부)장을 통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 ③ 학부(과)장은 심의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학부(과)장을 통해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임용 기준)

- ① 계약기간 내 강의평가 결과 80점미만이 1과목 이하이고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며, 기타 재임용 평가 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70점 이상으로 정한다.

② 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기준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24조(신분보장)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제25조(타교강의허가)

강사는 타교에 비전임교원 등으로 임용되어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임용된 사실을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강의담당 시수)

- ① 강사의 강의시간이라 함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강사의 강의 담당시수는 학부 및 대학원, 부속기관의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 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④ 강의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 ① 강사의 강사로 산정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의로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06-18>
- ②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 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제28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당연퇴직)

-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1. 사망한 경우
 -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8.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②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복무기준 준용)

- ①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강사는 연구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기타)

강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08.0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03.01.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09.01.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6.09.01.부터 시행한다.